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7

서 울 고 등 법 원

춘천제2행정부

판 결

사 건 (춘천)2019누83 징수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군수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. 12. 18. 선고 2018구합5572 판결

변론종결 2019. 8. 26.

판결선고 2019. 9. 2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
2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.

3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가 2014. 12. 19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,159,200원, 지방교육세 855,920원, 농어촌특별세 427,960원[1]의 부과처분을 취소한

1) 원고는 2019. 5. 14.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변경 후 청구취지를 '피고가 2014. 12. 19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,159,200원, 취득세 가산세 3,596,340원, 지방교육세 855,920원, 지방교육 가산세 302,960원, 농어촌특별세 427,960원의 부과처분'의 취소(주위적) 및 무효확인(예비적)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.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7

다. 예비적으로,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(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. 4. 7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,159,200원, 취득세 가산세 3,596,340원, 지방교육세 855,920원, 지방교육 가산세 302,960원, 농어촌특별세 427,960원,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2,8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,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2. 2. 29. 강원 평창군 B 외 4필지 토지 총 33,22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2. 1. 26.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. 이하 '구 조세특례제한법'이라 한다) 제120조 제3항 본문이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,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4. 12. 19. "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."라는 이유로,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0,159,200원, 지방교육세 855,920원, 농어촌특별세 427,960원을 부과·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부과처분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. 7. 3. [redacted]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, 2018. 1. 30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"원고의 이의신청

고가 2014. 12. 19.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취득세 10,159,200원, 지방교육세 855,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7,960원에 관한 것이므로, 변경 후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7

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,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."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9호증, 을 제1, 2, 3, 7호증(가지번호 생략;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또는 항변의 요지

가. 원고

1)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, 2017. 6. 14.경에야 뒤늦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다.

2)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.

3)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고, 두 차례의 산지전용허가 연장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017. 5. 2.경 원상복구하였을 뿐이다.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[2]가 정하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피고

1)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.

2)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, 이 사건 부과처분

2) 원고는 제1심에 제출한 소장 및 2019. 5. 14.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 의한 것으로 전제하였다.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 조항은, 조세특례제한법이 2014. 12. 23. 법률 제12853호로 개정(2015. 1. 1. 시행)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그 추징에 관한 제120조가 삭제됨과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. 12. 31. 법률 제12955호로 개정(2015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.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(제12955호, 2014. 12. 31.) 제14조는 "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"라고 정하고 있으므로, 원고가 2012. 2. 29.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해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7

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.

3. 관계 규정의 표시

별지 기재와 같다.

4.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
나. 을 제6,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14. 12. 19.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[redacted]시 [redacted] 구 D아파트, E호'이었던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일 등기우편으로 위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,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자 C의 누나인 소외 G이 2017. 4. 7.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분납확약서를 제출한 사실, 피고가 2015. 1. 22.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. 한편 위 2014. 12. 19.자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4. 12. 19.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,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.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2017. 6. 14.경에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7

백하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.

5.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

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피고는 2014. 11. 4. 원고에게 "2014. 11. 10.부터 같은 달 28.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."라는 내용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사실,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이 실제로 2014. 11. 17.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한 사실, ③ 피고는 2014. 11. 19.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'성남시 수정구 H아파트, I호'에 등기우편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, 위 통지에는 "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16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"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. 또한 위 2014. 11. 19.자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쳤으므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

갑 제3, 6,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2011. 6. 28.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'공장(톱밥제고) 신축 부지조성'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, 원고는 2016. 7.경 'J 사업계획서'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, 피고가 2015. 7. 14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7

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기간을 2016. 6. 30.까지 연장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2. 2. 29.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년[3] 내에 목적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,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. 나아가 을 제1,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년 내에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6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{2017. 4. 7.자 부과처분의 취소(주위적) 및 무효확인(예비적)을 구하는 구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}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승훈

판사 이재찬

3)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3년 내에 목적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한 것인데,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과처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7

판사 양승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7

별지

관계 규정의 표시

■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2. 1. 26.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○ 제120조(취득세의 면제 등)

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·처분(임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

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(제12955호, 2014. 12. 31)

○ 제14조(일반적 경과조치)

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